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정유업계 건의사항

- 대한석유회 -

이 내용은 지난 8월 25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편집자주)

이하 내용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류 세제개편과 관련 정유업계 입장 및 건의사항임.

1. 수송용 유류의 적정 상대가격비

- 휘발유에 대한 세금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대비 10%인하하고, 휘발유 세금감소분은 경유와 부탄으로부터의 세금인상분으로 보전.
- 수송용 LPG의 경우는 당초 세제개편안 수준으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① 휘발유 사용 소비자의 상대적 불이익에 따른 조세저항, ② LPG차량으로의 급격한 전환시 유증간 수급불균형 심화, ③ 충전 불편에 따른 소비자의 새로운 불만 야기, ④ LPG 차량으로의 부분별한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개편안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

(W/ℓ)

구분	휘발유	경유	부탄
현행 상대가격	100	44	24
개편 상대가격	90	60	55

2. 산업용 유류의 적정 상대가격비

- ①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에 따른 심각한 중유의 공급과잉 문제 ② LNG의 공급확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는 점, ③ 중유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환경 Cost가 발생된다는 점, ④ 석유정제업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 ⑤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Cost 발생이 불가피한 점, ⑥ 선진외국의 경우도 중유의 가격이 LNG 대비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⑦ 정부의 LNG보급확대정책 및 중유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LNG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유의 수요는 정체되고 있는 점, ⑧ 가스산업의 민영화 및 가격자유화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유에 대한 세금부과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바람직함.

구분	산업용		열량기준(kcal) 상대가격	
	중유(W/ℓ)	LNG(W/m ³)	중유(W/ℓ)	LNG(W/m ³)
'99년 평균가격	242	287	91	100
건의안	242	287	91	100

[첨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유업계 입장 및 건의사항

1. 수송용 유류

1) 4개 연구기관 용역안

(W/ℓ)

구분	휘발유	경유	부탄
현행 상대가격	100	44	24
개편 상대가격	100	70~80	55~65

2) 검토 의견

가. 정부의 전반적인 개편방침과 관련

- 수송용 유류간 가격의 왜곡구조를 시정한다는 원칙과 방침은 적절히 반영되어 있어 바람직한 개편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에너지관련 세수는 총국세의 약 14% 수준이며, 에너지 관련 세수중 석유류의 비중은 거의 대부분인 약 89% 수준인 상황에서, 추가 세금부담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유종간 세금 배분이 적절히 분산되어야 함.
- 따라서, 현행 운행단계 세부담율도 과도한 상황이므로, 휘발유에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약 10%정도 인하하고, 경유와 부탄으로부터의 세금인상분을 휘발유로부터의 세금 감소분을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경유와 수송용 LPG의 급격한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세금인상 수준과 관련

- 경유의 경우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휘발유 가격의 60% 수준으로 인상.
- 부탄의 경우는 휘발유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하여 휘발유와 동등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비자불만, 충전의 불편성 등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55%수준으로 인상.

다. 세계개편안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부탄사용자 및 자동차 생산업체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용역안의 계획보다 인상폭을 하향 조정할 경우, 휘발유 사용 소비자의 상대적 불이익에 따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체 유종간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부탄의 세금인상은 당초 방안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임.

더구나, 휘발유 사용자의 LPG로 전환시 수급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며, NIMBY현상에 따른 충전소 건립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전 불편에 따른 LPG사용자의 불만야기, 휘발유 차량의 무분별한 전환에 따른 안전사고의 증대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정부는 버스·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인데, 이 경우 당초 세금인상을 통해 환경개선을 기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희석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자영업자만 증가되는 세수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따라서, 무차별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배연탈황장치 설치업체 등 세계개편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것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라. 정유업계 세계개편안

(W/ℓ)

구분	휘발유	경유	부탄
현행 상대가격	100	44	24
개편 상대가격	90	60	55

2. 산업용 유류

1) 4개 연구기관 영역안

구 분	산업용		열량기준(kcal) 상대가격	
	중유(₩/ℓ)	LNG(₩/m³)	중유(₩/ℓ)	LNG(₩/m³)
'99년 평균가격	242	287	91	100
개편가격(1안)	312	275	115	100
개편가격(2안)	267	282	100	100

2) 검토 의견

(1) 정부의 전반적인 개편방침과 관련

□ 제1안의 경우는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과 국내 수요구조와의 차이에 따른 공급과잉 상황, 중유를 사용하는 중소산업체의 원가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중유의 공급과잉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비용의 25%만 반영하였다는 안은 중유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개편안 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은 석유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안임.

(2) 세금인상 수준과 관련

□ 선진외국의 경우도 중유대비 LNG의 소비자 가격 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음.

- 주요 선진외국의 중유/LNG간 상대가격 비교

구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스페인	평균
중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LNG	104	130	156	133	175	95	127

* 1998년도 기준

- 특히, 개별국가의 유류소비에 대한 원유생산 비중, 총에너지 소비에 대한 석유의존도, 인당 석유소비량,

인당 1차에너지 소비량 및 천연가스 공급방법(LNG 탱커)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용 중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Gap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임.

(단위: US\$/TOE)

구 분	B-C유(A)	천연가스(B)	비중(B/A)
한 국	196.7	256.2	1.30
일 본	179.9	470.1	2.61
대 만	160.4	312.9	1.95

* 1996년 기준

** OECD/IEA, Energy Prices and Taxes, 1997 2/4

□ 따라서 산업용 중유와 LNG의 상대가격이 100대 130 정도의 가격차가 발생될 수 있도록 세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3) 세계개편안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가. 신규 환경규제에 따른 환경Cost 미반영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개편안은 현재의 환경규제수준에 기초하여 중유와 LNG의 상대가격비를 도출하였으나, 정부가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추가 Cost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내재화가 감안되어야 함. 더구나, 정제업자는 LNG 수입업자와 달리 원유 및 증질유 도입/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예방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150억 이상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나. 구조조정 Cost에 대한 정확한 인식 결여

□ LNG와의 형평성 여부를 현재 시점에서 B-C에

특소세가 부과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조정 Cost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임.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은 석유산업이 오랫동안 사회발전에 공헌해 온 점, 석유소비자가 석탄산업의 완만한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해 오고 있는 퇴출 Cost는 물론 LNG의 진입 및 공급확대를 위해 1조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NG소비자가 석유산업 특히 중유의 수요감소에 따른 퇴출 Cost를 일정기간 부담할 때 역사적/사회적 형평성이 달성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단위:억원)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석탄산업 퇴출 지원	45,791	1982~2000
LNG공급기반 조성 지원	16,598	1987~2000

※ '95~2000년간 예특자금 징수 및 지원 비율 비교

(단위:억원)

구분	징수액	구성비	지원액	구성비	지원/징수 비율
석유	5,953	49.7%	2,949	25.06%	49.54%
LNG	325	2.7%	970	8.24%	298.50%
석탄	1	0.0%	3,235	27.50%	323.5천%
용자금회수등	5,692	47.6%	4,613	39.20%	81.04%
합계	11,971	100%	11,767	100%	98.30%

다. 산업용 LNG가격의 적정성 의문

□ 에너지원간 공정경쟁은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간의 단순 가격추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격통제 및 해당산업의 민영화 여부 등이 에너지가격 결정의 중요 결정변수가 되므로 공정경쟁 기반의 조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해당에너지의 구조조정 비용 부담 기간/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중유의 가격은 LNG도입초기에는 LNG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현재는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LNG평균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임.

(단위:₩/10,000㎥)

구분	B-C유(A)	LNG(B)	차이(A-B)
1987	146.7	332.8	△ 186.1
1990	93.8	191.0	△ 97.2
1993	93.1	184.8	△ 91.7
1996	139.4	187.3	△ 47.9
1997	217.7	198.9	+ 18.8
1998	313.5	273.0	+ 40.5
1999	260.0	236.4	+ 23.6
2000.1	315.1	284.0	+ 31.1

* 에너지통계월보(에너지연), LNG는 서울지역 가중평균 가격, 기효율 반영 기준임.

- 이러한 가격 역전현상은 저유황 B-C유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및 원유가 상승 등 원가 부담의 증가 뿐만 아니라, 타 용도에 비해 산업용 LNG가격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하기 때문임.

- 즉, 산업용 LNG가격을 경쟁관계에 있는 B-C유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공정경쟁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분을 일반 서민용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단위:₩/㎥)

구분	주택용	일반 영업용	산업용
LNG	362.3	309.7	273.6
주택용 대비	1.00	0.85	0.76

* 2000.1월 시행 도매가격 기준(부가세 포함)

· LNG의 경우는 산업용에 대한 가격 인하분을 서민용(주택용/일반용) 등 여타 용도의 공급

가격에 전가시킬수 있으나, 석유제품은 대외개방에 따른 수입대체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 함.

- 따라서, LNG도입 평균단가와 소비자가격/산업용가격의 사용량에 따른 공평한 비용부담 즉, 동일열량대비 적정가격의 재산정이 세계개편이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라. 석유정제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 무시

- B-C유는 원유 도입 후 국내 가공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국내 석유정제업의 '98년도 총부가가치 총액은 3조6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총생산의 0.8%에 해당하는 규모임)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수입가격이 LNG대비 저가임에 따라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유발하여 LNG대신 원유를 도입하여 B-C유 소비함으로써 국가전체적으로 연간 4억불의 국제수지 개선효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LNG(A)	원유(B)	차이(A-B)	'98년 중유수요	국제수지개선효과
16.46\$/B	12.74\$/B	3.72\$/B	110,645천Bbl	412백만\$

* LNG : '98년 도입실적 146.64\$/톤(Bbl 환산계수 8.91)

** 원유 : '98년 도입실적 12.74\$/B

- 반면 B-C유의 LNG로 수요전환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급상 LNG가격 상승 및 B-C유 수출가 하락을 촉진시켜 상대적으로 고가인 LNG수입증가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고가 LNG 제품에 대한 현행 특소세 부과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Cost미반영

- 더구나, LNG는 인수기지의 한계로 인해 장기계

약에 따른 수급 Unbalance문제를 유발하는 등 저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능력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반면, 1, 2차 Oil Shock을 경험한 석유류는 정부 및 민간부문의 비축(2000년 현재 38일 수준이나 장기적으로는 60일까지 증대 가능)을 통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에너지 Security를 위해 공헌하고 있음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됨.

(4) 중유업계 건의사항

- 석유제품 특히, 중유의 경우는 세계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도 수요가 정체되고 있으나, LNG는 1986년 도입된 이후 청정에너지 사용확대 정책추진으로 1990년 이후 연평균 21.0%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비중 역시 1990년 3.2%에서 1999년 9.3%로 3배정도로 대폭 증가하고 상황에서 중유에 대한 세금부과는 현실을 도외시한 제안임.

구 분	산업용		열량기준(km) 상대가격	
	중유(W/l)	LNG(W/m ³)	중유(W/l)	LNG(W/m ³)
'99년 평균가격	242	287	91	100
건의안	242	287	91	100

- 중유가 석유산업에서 차지하는 특성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용 중유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은 절대 적절하지 않으며, 최소한 현수준의 세금체제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중유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는 LNG 고시가격의 폐지 및 가스산업의 민영화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시장에서의 다수 참여자가 존재하여 중유와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된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음. ☹

◎ 산업자원부고시제2000-90호

석유사업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8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의무이행에관한고시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동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영 제21조에서 규정한 “석유비축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 유종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3. 공업원료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 ②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대상 유종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단,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수입 또는 판매하는 당해 유종을 말한다.
- ③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함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양으로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재고량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물량을 말한다.
- ④ “운영재고량”이라 함은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영 제22조 제1항에 의거 인정하는 양을 말한다.

- ⑤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함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을 말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은 통관한 후 비축하여야 한다.
- ⑥ “연간내수판매량”이라 함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을 말한다.

제3조 (석유비축의무부과)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2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석유공사사장(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영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비축의무량은 발표와 같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량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④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예정일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동기간의 월평균 비축의무량을 달성하여야 한다.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규로 등록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공사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⑥ 석유비축의무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을 보유하여야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간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일최저통관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가 있는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월로부터 석유비축

의무량 미달시점 이후 매월말기준 측정일까지의 일 평균 재고량이 동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 ⑦ 영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자별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비축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 ① 석유비축의무량은 다음 각호의 사실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량(미통관물량을 포함한다)으로 계산한다.

1. 공장, 수입지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 포함)
 2. 저유소(위탁저유소 포함).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기준)인 유조선 또는 LPG운반선
 5. 해상구축물(6개월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 또는 해안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
 6. 연안선박
- ②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할 석유비축의무량을 계산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 ③ 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어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 ④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운영재고량 및 부과금 면제비축량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text{ 운영재고량} = \frac{\text{연간 내수판매량}}{365(366)\text{일}} \times \text{지정일수}$$

$$2. \text{ 부과금면제비축량} = \frac{\text{연간 내수판매량}}{365(366)\text{일}} \times \text{지정일수}$$

- ⑤ 석유비축의무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당해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이 전월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월 15일까지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다.

- ⑥ 신규 석유비축의무자의 최초년도 비축의무량은 최초사업개시월로부터 당해연도(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말까지의 내수판매계획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비축의무량은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차년도는 최초사업개시월로부터 당해월의 전전월까지의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전월의 비축의무량을 준용한다.

제5조 (석유비축재고현황 등의 보고)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월의 일석유비축재고현황을 익월 15일까지 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석유비축대행업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월의 일석유비축재고현황을 익월 15일까지 공사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재고현황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석유비축재고현황 등을 종합하여 당해월의 석유비축재고현황을 익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보)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재고량이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1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현장검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 및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석유비축 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석유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 부과)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후, 시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를 계속하여 위반한 경우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부과액 산식 :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 × 국내평균수입단가

$$\times \frac{\text{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366)\text{일}} \times 60\text{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

2. 제1호의 석유비축의무량 미달물량은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개월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보된 시정기간까지의 일평균 미달물량을 말한다.

3. 제1호의 국내평균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비축유종의 국내 CIF 평균도입단가를 적용한다. 단,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비축 유종은 원유로 하고, 석유가스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프로판으로 하며, 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당해 유종으로 하되, 수입유종이 둘이상일 경우에는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4. 제1호의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의무량이 미달된 월의 최초일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통보된 시정기간까지로 한다.

5. 제1호의 내국수입유전스율은 과징금부과일의 한국외환은행 내국수입유전스율을 적용한다.

6. 제1호의 국내평균수입단가에 대해 적용할 환율은 과징금부과일에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된 과징금 금액의 1/3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표】

석유비축의무자의 2000년 석유비축의무량

1. 연간내수판매량 산정기간 : 당해 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

(예 : 금년8월의 경우 '99.7 - 2000. 6까지)

2. 연간내수판매량 산정방법 : 원유수입량 × (1 - 납사·용제·아스팔트 생산수율) + 제품수입량(휘발유생산용 반제품 포함) - (수출량 + 국제병커링량 + 국내병커링량 + 비축용 판매량 + 비축용 수입량 + LPG의 공업원료용 판매량 + 윤활기유 생산용 B-C유 투입량 + 부산물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판매량)

3. 석유비축의무자의 2000년 석유비축의무량

구 분	석유비축의무량	운영제고량	부과금면제비축량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연간 내수판매량 또는 내수판매계획량) × 38/365	(연간 내수판매량 또는 내수판매계획량) × 26/365	(연간 내수판매량 또는 내수판매계획량) × 12/365
LPG수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연간 내수판매량 또는 내수판매계획량) × (성수기는 25/365, 비수기는 17/365)	(연간 내수판매량 또는 내수판매계획량) × (성수기는 25/365, 비수기는 17/365)	

* 비수기 : 4월~9월, 성수기 : 10월~익년3월